

# 디지털 기기 규제

Managing Digital Device  
Use in Schools



출처: AI 생성 이미지 (Gemini)

## 학교 디지털 기기 규제의 필요성

디지털 기기 규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집중도와 학교 안전 문제 때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에서 학생 59%는 적어도 일부 수학 수업에서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 사용 때문에 주위가 분산된다고 답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방해는 학업 성취와도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동시에 UNICEF는 학교의 디지털 정책이 단순한 통제를 넘어, 온라인 괴롭힘 예방, 사생활 보호, 학생 데이터 보호, 안전한 사용 규칙 마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학교의 디지털 기기 규제는 **수업권 보호와 학생 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학교 운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OECD, PISA 2022 Results, Volume II, 2023; UNICEF, Online Safety in Educatio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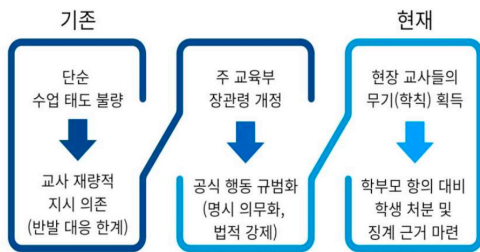
## 나라별 비교에서 살펴볼 점

나라별 사례를 읽을 때는 어느 나라가 더 엄격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규제하는지와 어떻게 예외를 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대상이 스마트폰만인지, 스마트워치·이어버드·태블릿까지 포함하는지, 적용 범위가 수업 시간에 한정되는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확대되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또 교육 목적 사용, 건강상 필요, 장애 학생 지원, 교사 지시에 따른 활용처럼 어떤 예외를 인정하는지도 중요하다. UNICEF는 학교가 이러한 기준을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 형태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OECD도 기기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학교의 집행 역량과 학생의 자기조절 역량**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국의 사례는 단순한 금지 조치의 나열이 아니라, **각국이 학습·안전·권리·자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보여 주는 비교 자료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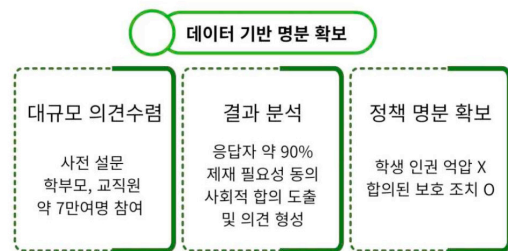
출처: UNICEF, Online Safety in Education, 2025; OECD, Managing Screen Time, 2024

### ▶ 학교 안: 주정부 주도의 시스템적 규제

- 미시적 접근: 사용자 통제
- 개인의 자율성 존중 → 주 정부 주도 시스템적 규제
- BC: 스마트 기기 사용 관련 학칙 개설키무화
- 알버타: 규제 개설키전 대규모 조사로 명분 확보
- 온타리오: 교내 와이파이망과 공용 기기에서 SNS 접속 제한



BC주 정책 흐름



알버타주 정책 명분 확보 과정

### ▶ 학교 밖: 공급자의 책임으로 시야 확장

- 거시적 접근: 설계자 제재
- 소비자 통제 → 공급자 책임 강화
- 온라인 피해 방지법 제정 노력
- 학교 및 교육청 연합 빅테크 회사 고소



온라인 피해 방지법



학교 및 교육청 연합



빅테크 고소 뉴스

## ▶ 학교 디지털 기기 규제: 수업 집중도와 학생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준

핀란드는 PISA 성취도 하락과 수업 집중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수업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사와 교장은 학습을 방해하는 기기를 일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학교는 일과 전반에 걸친 기기 관리 규칙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026년 1 월에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스마트폰 소유 지양 및 SNS 사용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 권고안을 발표하여 **발달 단계별 엄격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했다.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AI를 인간을 돕는 '증강지능'으로 정의하고, 교육 목적에 따라 활용 범위를 네 가지 색상으로 구분한 '**AI신호등 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핀란드는 무분별한 디지털 확산 대신, 인간적 연결과 깊은 집중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보호하며 기술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핀란드 교육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디지털 도약'에서 '학습권 보호'로

#### 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 및 연령별 보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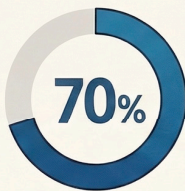
#### 기본교육법 개정을 통한 수업 중 사용 금지

2025년 8월부터 수업 중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교사의 기기 회수 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함.

#### 연령별 3단계 디지털 진입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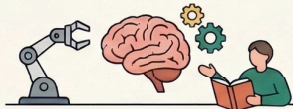
#### 기기 규제 도입 후 학교 내 모바일 데이터 최대 70% 감소



법 시행 이후 학교 주변 데이터 사용량이 급감하고 대면 상호작용 회복 및 괴롭힘 감소 효과가 나타남.

####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신호등 모델'

#### AI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증강지능(Augmented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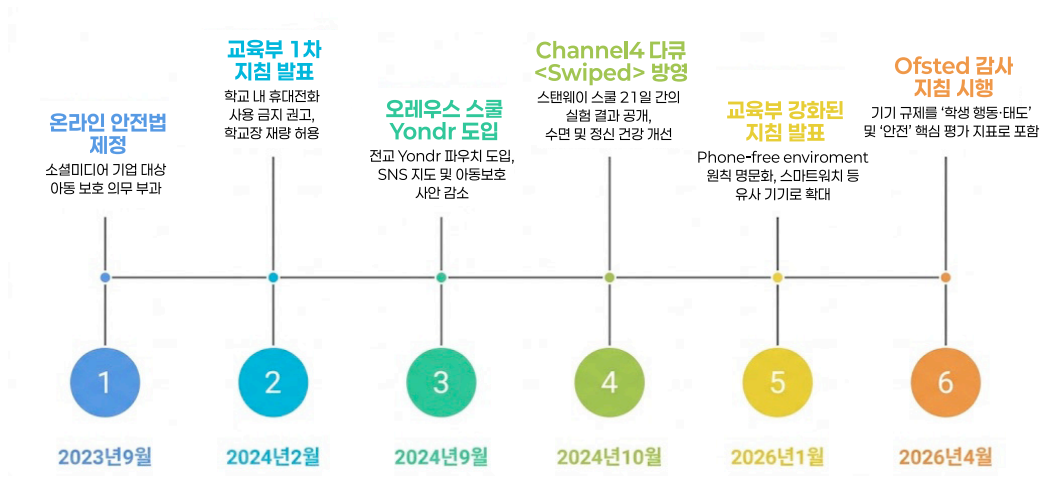
AI를 인간의 지적 역량을 돕는 보조 도구로 규정하여, 최종 교육적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교사에게 돌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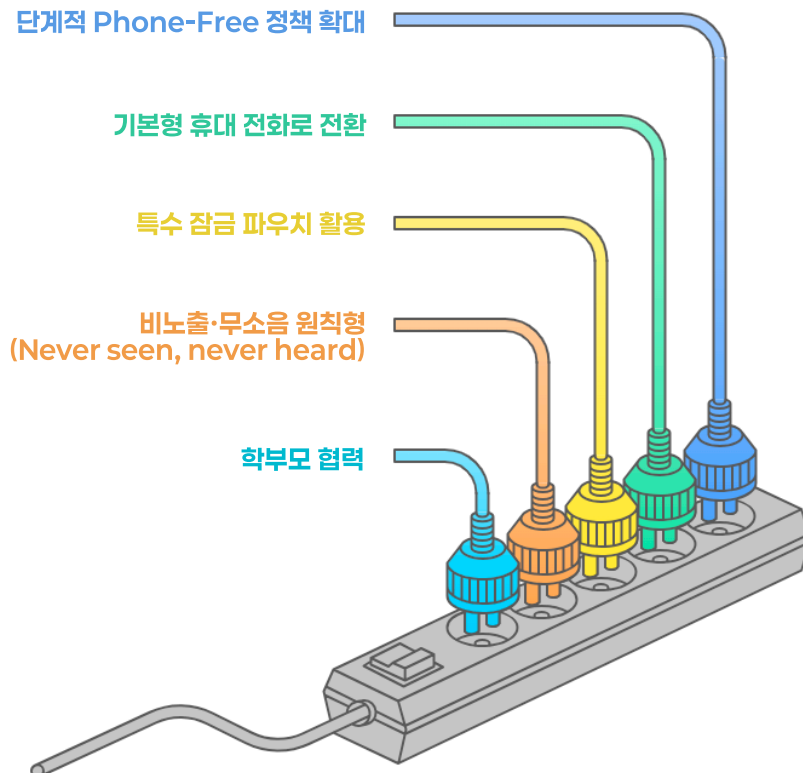
- 필수 활용**  
AI 활용 능력 자체가 학습 목표인 경우 (보고 필수)
- 제한적 허용**  
활용은 가능하나 범위와 사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활용 금지**  
학습지의 기초 역량 확인이 목적인 경우

교육 목적에 따른 3가지 전략적 모드 적용

▶ 영국 학교 디지털 기기 규제 정책 타임라인



▶ 영국 학교의 디지털 기기 규제 전략



▶ **스마트기기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프랑스는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육법과 2018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제 법」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학교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는 규칙을 통해 수업 시간과 학교 생활 전반에서 사용 제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교육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학습 환경과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보관함 운영, 사용 제한, 교육적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FRANCE**

**스마트기기 정책 구조**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 약95%, 일상적 사용 확대



**제도적 기반**

- 교육법 제L511-5조
- 2018년 휴대전화 규제 법
- 초·중학교: 법적 적용
- 고등학교: 학칙 적용



**학교의 운영 방식**

- 학교 규칙 (règlement intérieur) 설정
- 수업·쉬는시간 사용 제한
- 교육 목적 사용 제한적 허용



**정책적 논의**

- 학습 환경 유지 필요성 제기
- 사용 제한 방식 다양화
- ‘디지털 심표’ 등 관리 접근 제시


**법적 기준 + 학교 규칙 기반으로 운영**



▶ **청소년 디지털 환경 규제의 다층적 전환**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확산 이후 불안·우울·자해 위험과 학습 집중도 저하가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학교 내 디지털 기기 규제가 학습권·정신건강 보호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주별 SNS 규제와 학교 휴대폰 사용 제한(Yondr 등)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체계화하여 학교 내 사용 제한과 학교 밖 책임 있는 사용 교육을 병행하는 다층적 정책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 디지털을 규제하고 교육하다**



**미국의 SNS 규제 정책**

- 미네소타  
위험 경고 라벨 부착
- 캘리포니아  
SNS서비스 설계 규제
- 플로리다  
연령 제한으로 접근 금지



**미국의 디지털 시민교육**

- 6학년 이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 규제가 아닌 필수 역량
- 전 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 운영



# 호주, 뉴질랜드 Australia & New Zealand

## ▶ 학교를 온전한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정책

호주와 뉴질랜드는 학생의 학업 집중도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등교부터 하교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일과 시간 내 금지' 정책을 전격 도입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정책의 핵심은 청소년 디지털 기기 규제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사이버 폭력 및 심리적문제로부터 보호하여 학교를 온전히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 정책 시행 결과, 현장에서는 수업 몰입도 향상, 학생 간 대면 소통 증가, 사이버 폭력 감소 등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휴식 시간 사용 제한에 대한 일부 학생의 반발이나 가정과의 긴급 연락 문제 등은 학교 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로컬 정책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에듀테크가 활발히 활용되는 국내 교육 현장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이제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과 '규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청의 강력한 표준 가이드라인 안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입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 호주와 뉴질랜드의 디지털 기기 규제 현황

### 1. 정책의 배경과 핵심

#### “교실에서 사라진 스마트폰”

호주/뉴질랜드 사례

일과 시간 내 미사용(Off and Away) 정책 도입

교육 본질 회복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습권과 정신 건강을 위한 국제적 권고 실현

AWAY FOR THE DAY

PHONES OFF, BRAINS ON

캠페인 포스터

### 2. 운영 방식과 예외 원칙

#### “자율적인 관리, 엄격한 예외”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자율적인 관리

엄격한 예외

학습 보조

기기 파손 및 분실에 대한 교사 면책 조항 설치

기기보관은 학교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건강 관리/수업 활용 시에만 엄격하게 예외 적용

### 3. 시행 결과와 과제

#### “되찾은 웃음과 남은 고민”

😊 시행 결과

수업 몰입도 향상

학생 소통 증가

사이버 폭력 감소

하지만

쉬는 시간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

가족과 연락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 필요

### 4. 국내 교육에 주는 시사점

#### “활용과 규제의 균형”

↑ 활용의 장점

에듀테크 활용의 장점은 가져가되

맞춤형 학습 지원

창의적 콘텐츠 체험

⚠️ 규제의 필요성

규제 관련 정책 마련 필요!

주요 산만 및 중독 예방

디지털 격차 및 소외 방지

균형

## ▶ 가이드라인과 역할을 세밀하게 설계한 정책

일본은 학생 스마트폰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GIGA 스쿨 구상을 통해 학습용 디지털 기기(1인1단말)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의 스마트폰 반입을 '원칙 금지', 중학교는 안전을 위한 '조건부 허용', 고등학교는 '반입 허용+수업 중 사용 규제'라는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용은 지자체·학교에 맡기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교 지급 단말만 사용하도록 하고, 학습용 기기와 사적 기기를 명확히 구분한다. 한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는 '스마트폰 등 여가 시간 하루 2시간, 초등 21시, 중고 22시까지 사용 권장' 조례를 제정해, 생활 가이드라인 형태로 가정의 사용 규칙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사례는 **디지털 전환과 학생 스마트폰규제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기기의 용도·시간·장소, 학교·가정·지자체의 역할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일본의 학생 스마트폰 규제와 디지털 기기 활용

학습용 단말은 확대, 개인 스마트폰은 엄격 관리

### 스마트폰 이용 현실

초등생 56% 스마트폰 보유

18세 미만 48% 보유, SNS·게임 사용 증가

수면 부족·학력 저하·의존 우려

### 학교 규제 원칙



초: 교내 반입 원칙 금지, 예외 시 교사 보관

중: 안전 위한 조건부 허용, 수업 중 사용 금지

고: 반입 허용, 수업·시험 중 사용 제한

수업은 GIGA 스쿨 1인 1단말로 진행

### 지자체·가정의 역할

-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조례
- 여가 시간 스마트폰 등 하루 2시간 권장
- 초등 21시, 중·고 22시까지 사용 권장
- 벌칙 없는 생활 가이드라인, 가족이 함께 규칙 만들기

시사점: 디지털 수업용 기기와 개인 스마트폰을 구분해 관리하고, 학교·가정·지자체가 함께 사용 시간과 규칙을 설계하는 구조가 중요

▶ **통제를 넘은 '디지털 소음으로부터의 보호구역'**

독일은 단순히 기기 사용을 '통제'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이 학습과 대화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교육적 청정 구역'을 보장하려는 근본적인 성찰에서 출발하여 규제의 관점을 '보호'로 전환했다. 스마트폰을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각 주(州) 별 상황에 맞게 **학교를 디지털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규제법을 만들었다.

▶ **독일 학교엔 스마트폰이 없다!?**

독일의 주요 3개 주(州)의 학교 내 디지털 기기 규제법

**"법대로 합니다!" (바이에른주)**

- 근거 : 바이에른 교육법(BayEUG) 제56조 제5항
-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만 허용
- 초등학교는 예외 없는 사용 금지!
- 위반 시, 기기 일시적 압수 가능(법적 권한 명시)

**"학교 문을 여는 순간, 디지털 소음 No~" (헤센주)**

- 근거 : '스마트폰 보호구역' 설치법 (25/26학년도 시행)
- 사적 사용 전면 금지 (학교 전체가 스마트폰 보호구역)
- 중고등학생도 수업 중엔 금지, 특정 구역만 겨우 허용!
- 위반 시, 수업 종료 시까지 엄격히 압수

**"금지보다 책임! 함께 정해봅시다!"**

**(니더작센주)**

- 근거: 주 교육부의 자율적 학교 내 규칙 수립 지침
- 학생·학부모·교사가 합의해서 규칙 수립
- '스마트폰 사용구역(Handy-Zone)' 지정 제안
- 위반 시, 우리가 정한 자체 규칙에 따라 조치

---

**기획 및 편집**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교육연구사 홍은진 및 발간위원 8명

---

**표지 디자인** 선산고등학교 교사 정기엽

**주소** 054-840-2276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WEB** [www.gbe.kr/gber](http://www.gbe.kr/gber)

---



# 디지털 기기 규제

---

Managing Digital Device  
Use in Sch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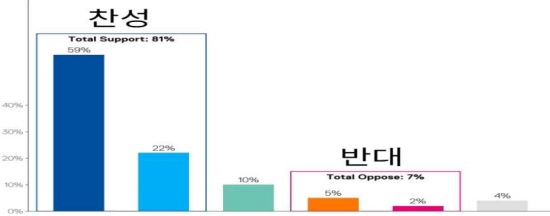


# 캐나다의 디지털 기기 규제

발간위원 : 안예린(포항장흥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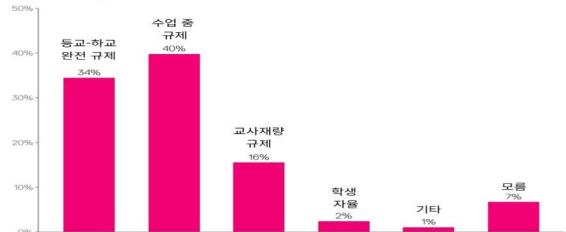
2024년을 기점으로 캐나다 K-12(유치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캐나다 공식 교육과정) 교육계는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과거 캐나다 교육계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학생의 자율성을 폭넓게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허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학습 결손과 사이버 폭력이 공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각 주 정부가 직접 나서 2024 가을 학기부터 주 교육부 주도하에 교내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디지털 기기 관련 통제에 대한 부담과 갈등을 정부가 분담하는 강력한 하향식(Top-down) 시스템적 개입을 내포한다.

Figure 1: Support for cell phone bans in K-12 Classrooms



[그림 1] 교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캐나다 대중의 인식 (Dais)

Figure 6: Preferred approach to cell phone restrictions in schools



주 정부들의 강력한 동시다발적 규제 이면에는 학부모를 포함한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가 존재한다. 2024년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 산하 연구소(Dais)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sup>1)</sup>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80% 이상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에 찬성했으며, 어떤 형태의 규제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단 2%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규제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0%가 수업 시간 중 기기를 개인 사물함이나 교실 내 휴대폰 보관함에 완전히 분리하여 보관하는 물리적 통제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등교부터 하교까지(Bell-to-bell) 기기 사용을 일절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도 34%에 달해, 캐나다 사회가 디지털 기기 규제를 단순한 교칙이 아닌 학생을 위한 필수적 보건·교육 조치로 인식하고 있음이 수치로 입증되었다.

1) Canadian Support for a K-12 Cellphone Ban - Survey Brief, the Dais, 2024

나아가 캐나다의 학생 디지털 기기 활용 제한 관련 대응은 학교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거대 소셜미디어 IT 기업(빅테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4개 교육청 연합은 틱톡과 메타 등을 상대로 약 40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 또한 각 플랫폼에 아동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 예정이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캐나다의 교육동향을 바탕으로 주 교육부 주도의 교내 수준 디지털 기기 규제 정책과 기술적 규제 실행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한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입법 사례 및 공교육 연합의 빅테크 소송 등 교외 수준의 거시적 제재 방안을 심층 분석하며 2024년을 기점으로 전면 개편된 캐나다의 다층적 디지털 기기 규제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 1. 학교 안에서의 규제: 개인의 자율성 존중에서 시스템적인 규제

### 가. 브리티시컬럼비아, BC주



Keeping kids safe online and in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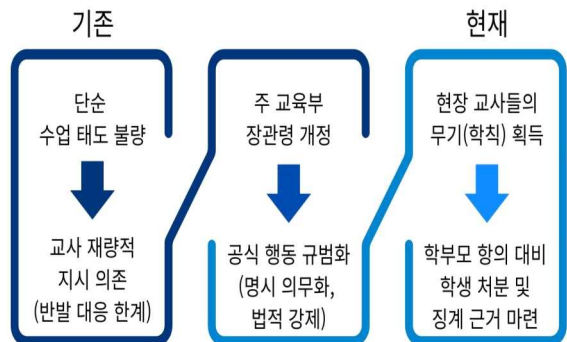
StrongerBC

[그림 2] BC주 총리실발 규제 관련 보도 자료

BC주는 체계적인 생활 지도 연계형 디지털 기기 규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주 교육부는 2024년 스마트폰 규제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산하 모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행동규범(Codes of Conduct)에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관련 내용 명시 의무화를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가을 학기부터 관내 모든 학교가 수업 중 개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BC주 모델의 핵심 경쟁력은 학생의 개인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통제를 수업 태도 불량과 같은 단순 일탈 차원이 아닌, 공식적인 행동 강령 위반으로 격상시켰다는 데 있다. BC주 정부가 먼저 나서 모든 학교의 행동규범에 이를 명문화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은 학부모의 항의나 학생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학칙(Code)에 근거해 당당하게 기기를 압수하거나 교칙에 따른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BC주의 사례는 선언적인 금지령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칙이라는 무기를 주 정부가 직접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지침 하달만으로는 교실의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현장 교사의 지도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다.



[그림 3] BC주 정책 흐름

### 나. 온타리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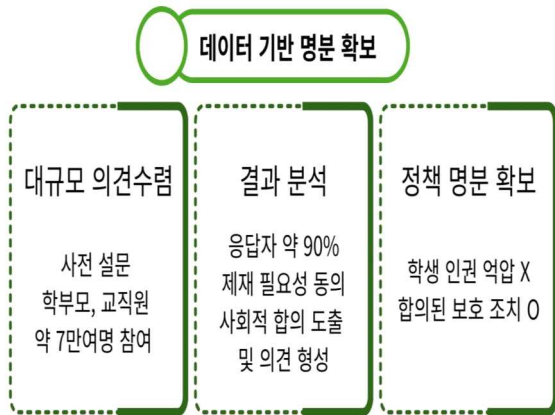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적 통제 방식을 주 전역에 도입했다. 2024년 발표된 온타리오주 교육부 지침(PPM 128)은 단순한 교내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유·초등생: 일과 시간 전체 제한, 중·고교생: 수업 시간 중 제한)을 넘어, 학교 내 구축된 Wi-Fi망과 공용 기기에서 소셜미디어(SNS) 접속제한을 의무화했다. 교육부의 이런 요구를 통해 온타리오주 현장 학교들은 학교 인터넷망을 이용해 몰래 SNS에 접속하는 우회로까지 기술적으로 차단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의 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 발표 회견

이러한 정책은 교사가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여야 했던 과거의 현장적 한계를 인정하고, 디지털 기기 통제의 책임을 일선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개별 교사의 디지털 기기 통제 부담 극복을 위해 주 정부의 행정력과 학교 인프라가 직접 기술적 방패로 나서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 다. 알버타



[그림 5] 알버타주 정책 명분 확보 과정

알버타주의 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 도입 과정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의견 형성 및 합의 도출의 모범사례다. 2024년 상반기, 알버타주 정부는 정책 발표에 앞서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여론 수렴에 돌입했다. 약 3주간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무려 7만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약 90%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 제재의 필요성에 지지를 표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버타주 교육부는 2024년 6월, K-12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 중 개인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 및 학교망 SNS 접속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기초가 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억압 조치가 아니라, 교실 붕괴 방지를 위해 90%의 학부모와 교사가 간절히 원했던 '보호 조치'임을 데이터로 증명하며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이는 규제 도입에 앞서, 교육 주체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명분 확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선례다.

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들이 연이어 도입되고 있지만 현장 안착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25년 5월 퀘벡주에서 벌어진 '스마트폰 전면 금지 반대 학생 파업'이다. 퀘벡 주 교육부가 수업 시간과 교실을 넘어 쉬는 시간, 복도 등 '학교 부지 및 일과 내 디지털 기기 사용 전면 금지'로 규제를 확대하자, 일부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로 연대하며 동맹 휴업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림 6] 퀘벡주 학생 시위

퀘벡주 학생들의 이례적인 집단행동은 단순히 10대들의 반항을 넘어, 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시사한다. 학생들은 가족과의 소통이나 학업을 위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필수라고 항변했지만,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를 알고리즘과 중독성 콘텐츠에 의해 고도로 설계된 디지털 중독의 금단 증상으로 진단했다.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 기기 사용 규제를 두고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사이, 정작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라는 자성이 캐나다 교육계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은 캐나다 교육 당국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단순히 학생 개인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 중독의 근본 원인인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을 직접 정조준하는 입법과 소송으로 시야를 확대한 것이다.

## 2. 학교 담장을 넘어, 인식의 확대: 학생 통제에서 플랫폼의 책임으로

### 가. 연방정부 입법



[그림 7] 온라인 피해 방지법

퀘벡주 사태에서 확인되듯, 교내 통제만으로는 일상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디지털 기기 중독과 유해 콘텐츠 방치의 책임을 개인이나 일선 학교가 아닌 '플랫폼 기업'에게 직접 묻는 연방 수준의 법제적 노력에 나섰다. 2024년 발의된 온라인 피해 방지법<sup>2)</sup>이 그 포문이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규제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통제'에서 '공급자의 책임'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2) Bill C-63: An Act to enact the Online Harms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An Act respecting the mandatory reporting of Internet child pornography by persons who provide an Internet service and to make consequential and related amendments to other Acts, 2024



[그림 8] BILL C-63 폐기를 알리는 뉴스

해당 법안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착취물과 온라인상 혐오 표현 등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았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근간을 흔드는 이 거대한 규제는 순탄치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의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 논란에 휩싸인 데다, 2025년 초 트뤼도 전 총리의 사임과 의회 정회와 맞물려 원안이 자동 폐기되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그럼에도 캐나다 정치계는 아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라는 명분을 고수해 핵심 규제 조항만을 분리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빅테크와의 기나긴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 나. 교육계의 집단 소송전

연방정부가 험난한 입법 전쟁을 치르는 사이, 공교육 현장의 붕괴를 온몸으로 겪어낸 교육청들은 거대 IT기업(빅테크)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외부적으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4년 온타리오주 4개 교육청 연합은 틱톡과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 등을 상대로 약 40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온타리오주 내의 다른 교육청들과 사립학교들까지 원고로 합류하며 '소셜미디어 변화를 위한 학교 연대(Schools for Social Media Change)'라는 거대 연합체가 결성되었고, 이 사안은 캐나다 교육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소장에 나타난 고발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의 '고의성'에 있다. 소송 참여 교육 연합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뇌 발달 취약성을 악용하여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는 중독성 알고리즘을 고의로 설계하고, 학생들의 사고·행동·학습 방식을 변형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와 우울증이 폭증했으며, 학교는 무너진 교실을 수습하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느라 막대한 교육 예산과 행정력을 소진해야만 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2025년 3월, 캐나다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소송 참여 교육 연합의 손을 들어주며, 역사적인 정식 재판의 막을 올린 상태다. 이 거대한 소송전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의지 부족이 아닌, 거대 자본이 공교육 시스템에 가한 막대한 사회적 폭력이자 인프라 훼손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교육계에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림 9] 소송참여 교육청 연합 및 온타리오 학교들의 소송 기사

### 3. 맺음말

캐나다 교육 당국의 디지털 기기 규제는 학생 개인에 대한 통제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기 사용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 디지털 기기 도입 초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자율성에 의존하며 기기 사용을 제한하려 했으나, 일상에 깊게 뿌리내린 디지털 환경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주 정부는 교사 개인의 재량에 통제의 책임을 넘기지 않고, 학칙 개정 근거 마련과 교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SNS 접속 제재라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도입하며 공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를 직접 쌓아 올렸다.

더 나아가 캐나다의 행보는 학교 담장 밖으로 시야를 확장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근본 원인을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방정부 차원의 '온라인 피해 방지법' 추진과 교육청 연합의 대규모 소송전은, 학생들의 강박적 스마트 기기 사용을 단순히 개인의 통제력 부족이나 일탈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고의로 설계하고 위험 콘텐츠를 방치한 거대 기술(Big Tech) 기업에 그 책임을 묻고, 이들이 야기한 공교육 인프라 훼손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시적 학생 통제에서 거시적 플랫폼 규제로 패러다임을 확장한 캐나다의 실험은, 디지털 시대를 마주한 전 세계 교육계가 앞으로 어떤 구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선구적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 <https://news.gov.bc.ca/releases/2024PREM0004-000088>
- ▶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administration/legislation-policy/public-schools/personal-digital-device-restrictions-in-schools>
- ▶ <https://www.ontario.ca/document/education-ontario-policy-and-program-direction/policyprogram-memorandum-128>
- ▶ <https://www.alberta.ca/cellphone-use-in-schools-engagement>
- ▶ <https://www.cbc.ca/player/play/video/9.6756806>
- ▶ <https://www.techpolicy.press/an-overview-of-canadas-online-harms-act/>
- ▶ <https://globalnews.ca/news/10389105/ontario-school-boards-sue-facebook-instagram-snapchat-and-tiktok>
- ▶ <https://schoolsfor-social-media-change.ca/>



# 핀란드의 디지털 기기 규제

발간위원 : 김현주(경산중앙초등학교 교사)

핀란드는 2015년 이후 ‘디지털 도약(Digital Leap)’ 기조 아래 학교의 ICT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수·학습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며, 교육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기술 확산 자체보다 기술이 학습과 발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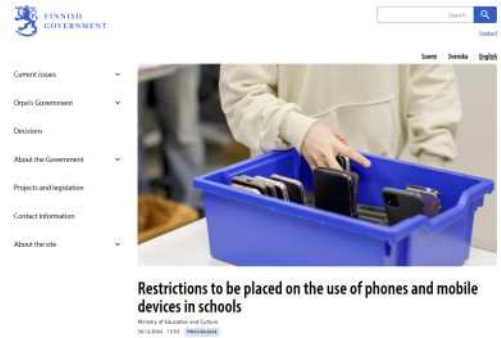
2022년 PISA에서 핀란드는 수학·읽기·과학 전 영역에서 이전 평가 주기보다 낮은 성취를 보였고, 학생의 41%는 수학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 때문에 주의가 분산된다고 응답했다.<sup>1)</sup> 이 결과는 기술이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핀란드 교육정책은 기술의 무조건적 확산보다 학습권·집중권·발달권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5년 8월부터 기본교육법 개정을 시행해 수업 중 휴대전화와 기타 모바일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각 학교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한 일과 전반의 사용·보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2026년 1월 핀란드 국립교육청(OPH)과 보건복지연구소(THL)는 0-13세 아동의 여가 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13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 스마트폰을 권장하지 않고,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도 허용하지 않으며, 성인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디지털 평화(Digital Peace)’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PH는 2026년 안에 13-18세 청소년 대상 후속 권고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핀란드가 디지털 전환의 선도국가에서, 이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학습의 질을 기준으로 디지털 질서를 재설계하는 국가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기본교육법 개정과 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

핀란드는 교실 내 집중력 저하와 학습 방해 문제를 더 이상 학교별 자율 규정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제안 HE 212/2024 vp<sup>3)</sup>를 거쳐 기본교육법을 개정했다. 관련 개정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 흩어져 있던 기기 사용 규율을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으로 재구성한 데 있다.



[그림 1] 모바일기기 사용 제한을 주장하는 핀란드 정부 기사<sup>2)</sup>

## 가. 법적 제한의 구체화와 교사 권한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업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의 기본 원칙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와 기타 모바일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학습 목적이나 개인 건강관리, 보조기기 활용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교사 또는 교장의 허가 아래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핀란드는 기기 사용을 일상적 허용 상태로 두기보다, 교육 목적이 분명할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출발점을 전환했다.

교사의 권한도 보다 명확해졌다. 교육문화부 설명에 따르면, 학생의 기기 사용이 수업이나 학습을 방해할 경우 교사와 교장은 해당 기기를 일시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동시에 학교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 기기 사용 및 보관 규칙을 학교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국가행정기구(AVI)는 학교가 법을 준수하는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명령이나 조건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즉, 이번 개정은 단순한 생활지도 강화가 아니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사 개입 권한과 학교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나. 학교 현장의 운영 변화와 초기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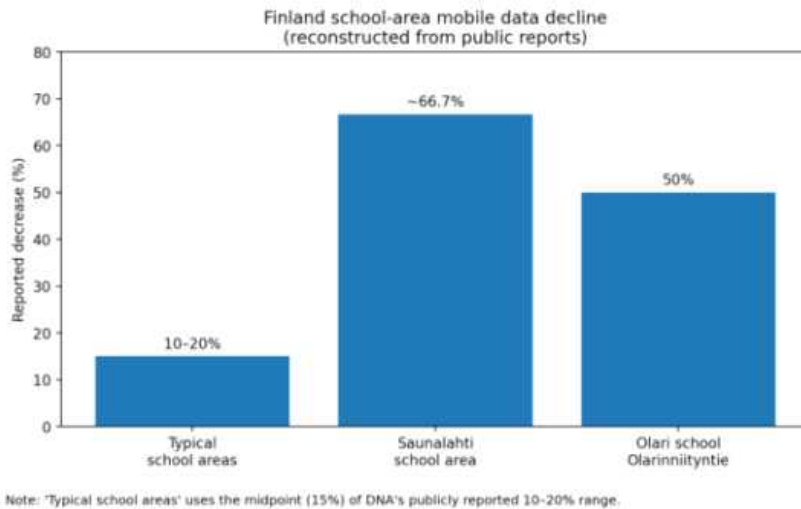
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중 제한을 넘어 학교 일과 전반의 기기 문화를 다시 설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핀란드 교육청은 법 시행과 함께 학교가 필요할 경우 수업 외 시간까지 포함한 추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점심시간 사용 금지, 쉬는 시간 일부 '모바일 프리' 운영, 보관함 활용 등 보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도입했

2) <https://valtioneuvosto.fi/en/frontpage>

3) 핀란드 정부가 2024년에 의회에 제출한 기본교육법 개정 정부안(휴대전화·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 법안)

다. 이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수업 중 사용만 통제된 것이 아니라, 학교 공간 전체의 상호작용 방식과 집중 환경을 다시 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초기 관찰 자료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DNA<sup>4)</sup>의 비교 분석에 따르면, 학교를 주로 서비스 하는 기지국 기준으로 2025년 4-5월과 8-9월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학교 주변 데이터 사용량은 대체로 10~20% 감소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50~70% 감소가 나타났다. 다만 DNA도 이 수치를 학업 성취나 집중력 향상을 직접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학교 주변 모바일 사용 변화에 관한 간접 지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6년 Yle<sup>5)</sup>가 여러 학교장을 인터뷰한 보도에서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사교적으로 변하고 학교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현장 평가도 소개되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 개정이 적어도 학교 내 모바일 기기 사용의 실제 빈도를 낮추고 대면 상호작용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 핀란드 학교 내 스마트폰 제한 정책에 따른 지역별 모바일 데이터 감소 현황<sup>6)</sup>

## 2. 학생의 디지털 기기 및 SNS 제한에 관한 국가 권고안(2026년 1월 22일 발표)

핀란드의 디지털 기기 및 SNS 정책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 ‘보호 중심의 강력 규제(6~13세)’에서 ‘자율 책임 중심의 관리(16~19세)’로 이행하는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엄격한 스크린 타임 제한과 SNS 금지 권고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보여주며, 중등 교육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기(14~15세)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4) 핀란드의 주요 통신기업 DNA Oyj, 핀란드의 선도적 통신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5) 공영방송사 Yleisradio Oy, 핀란드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공영 미디어 기관이다.

6) <https://www.sttinfo.fi/tiedote/71524690/koulujen-kannykkakielto-nakyy-mobiiliverkossa-datamaarat-laskeneet-paikoin-merkittavasti-mutta-koulukohtainen-vaihtelu-on-suurta?publisherId=1881&lang=fi>

### 가. 아동기(6-13세): 국가 차원의 구체적 통제와 '자연 진입' 원칙

6~13세 구간은 핀란드 정부가 가장 명확하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영역이다. 2026년 1월 발표된 핀란드 국립교육청(OPH)<sup>7)</sup>과 보건복지연구소(THL)<sup>8)</sup>의 권고안은 발달 단계에 따른 물리적 사용 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 스크린 타임 제한: 여가 시간 기준 6~10세는 일 최대 1시간, 11~13세는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한다(학습 목적 제외).
- 기기 소유 및 SNS 차단: 13세 미만 아동의 스마트폰 소유를 지양하며, 필요 시 기능 제한형 기기를 권장한다. 특히 Instagram, TikTok 등 주요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늦은 소유, 늦은 진입(Late start, Late entry)' 원칙을 국가 표준으로 확립했다.

### 나. 전환기(14-15세): 정책 공백 최소화를 위한 과도기적 규제 강화

14~15세 구간은 현재 국가 차원의 정량적 스크린 타임 기준은 미비하나,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는 '전환적 정책 구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정책 고도화 진행: 정부 차원의 후속 지침이 2026년 중 마련될 예정이며, 특히 오르포 총리 주도하에 15세 미만 SNS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정책적 검토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 교육 현장의 실효적 규제: 해당 연령대는 핀란드 의무교육 체계인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7-16세)에 속하므로, 2025년 개정된 기본교육법에 따라 수업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여가 시간의 권고안 유무와 별개로 학교 내에서는 이미 강력한 공적 규율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다. 청소년기(16-19세): 자율 규율 기반의 책임 모델

상급 중등 단계(고등학교 및 직업교육)에 해당하는 16~19세 구간은 국가의 직접 통제보다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 기관 자율 규정 중심: 교육기관은 자체 학칙을 통해 수업 방해 요소를 관리하며, 기기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물리적 강제력의 완화: 기본교육 단계와 달리 교내 기기 회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를 성인기에 준하는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보고, 법적 금지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기관 내 규정에 의한 관리를 우선시하는 핀란드식 교육 철학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7) 국가교육위원회 Opetushallitus, 핀란드의 국가 교육행정기관으로, 법률과 교육문화부 정책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8) 보건·복지 전문연구기관 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 법률에 근거해 통계·연구·전문정보를 제공한다.

### 3. 인공지능(AI) 활용 지침과 ‘신호등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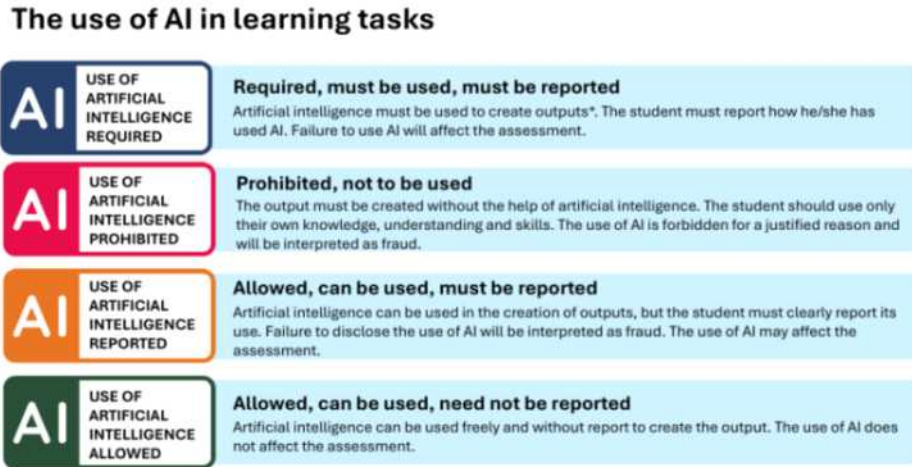
디지털 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규제하되, AI 역량 함양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디지털 컴퍼스 2030’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2025년 3월 발표된 지침은 AI를 ‘인간을 돕는 비서’로 정의한다.

#### 가. AI 활용의 핵심 원칙: ‘증강지능(Augmented Intelligence)’과 인간 중심 설계

핀란드 국립교육청(OPH)의 2025년 지침은 AI를 교사나 학생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역량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 중심의 도입을 지양하고 인간 중심의 교육 설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OPH는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곧 증강지능’이라는 공식을 통해 AI가 교육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사고 과정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임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AI가 수업과 평가 과정을 보조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교육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교사라는 인간 주체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AI 신호등 모델’: 교육 목적에 따른 전략적 차등 적용



[그림 3] 학습 과제에서 AI 신호등 모델의 활용<sup>9)</sup>

구분	모드 (Color)	AI 활용 기준 및 성격
필수 활용	파랑 (Blue)	AI 활용 능력 자체가 학습 목표인 구간. AI 결과물과 활용 방식 보고 필수
금지	빨강 (Red)	학습자의 기초 역량 확인이 목적인 구간. AI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
제한적 허용	노랑 (Yellow)	사용은 허용되나 활용 사실과 범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평가와 연동됨
자유 활용	초록 (Green)	학습 보조 도구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음

9) <https://arene.fi/wp-content/uploads/PDF/2024/tekoalysuositukset/ARENE%20AI%20english.pdf>

## 4. 맺음말

핀란드 교육의 최근 행보는 단순한 ‘기기 금지’를 넘어선,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적 주권의 회복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핀란드는 지난 수년간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술이 제공하는 편의성이 인간의 심층적 인지 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했다.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스크린 타임의 엄격한 제한과 청소년기 소셜 미디어 금지 입법 움직임은, 아동의 뇌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지적 안전장치이다.

2025년의 스마트폰 금지 법안과 2026년의 SNS 사용 제한 권고는 교육의 본질인 ‘인간적 연결’과 ‘깊은 집중’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안전망이다. 동시에 핀란드는 AI를 배척하는 대신 ‘신호등 모델’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술을 비판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기술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기술의 한계와 윤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의 완성형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핀란드의 사례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육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기기를 보급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며 인지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로드맵을 통해,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의 표준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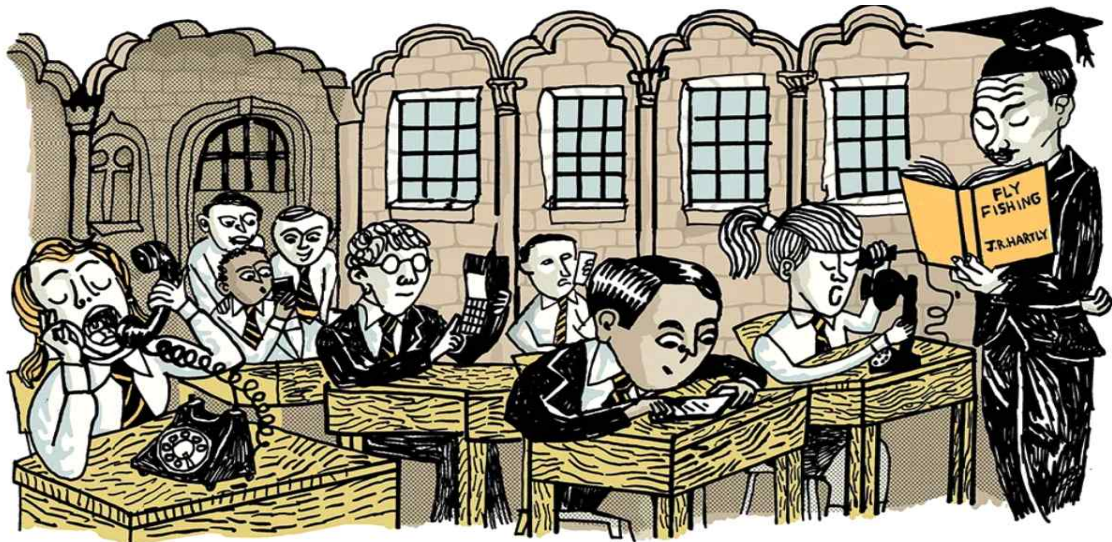
### 【참고 자료】

- ▶ <https://www.finlex.fi/en/legislation/collection/2025/245>
- ▶ <https://www.oph.fi/fi/koulutus-ja-tutkinnot/puhelimen-ja-muun-mobiililaitteen-kayton-saannot-koulussa>
- ▶ <https://www.sttinfo.fi/tiedote/71524690/koulujen-kannykkakielto-nakyy-mobiiliverkossa-datamaarat>
- ▶ <https://www.oph.fi/en/news/2026/recommendations-children-use-digital-devices-completed-personal-smartphones-not>
- ▶ <https://www.julkari.fi/server/api/core/bitstreams/d856efe1-efca-4619-b58d-25b96b31ded0/content>
- ▶ <https://arene.fi/wp-content/uploads/PDF/2024/tekoalysuosituksset/ARENE%20AI%20english.pdf>
- ▶ <https://digital-skills-jobs.europa.eu/en/initiatives/national-strategies/finland-finlands-digital-compass>



# 영국의 디지털 기기 규제

발간위원 : 정기엽(선산고등학교 교사)



(John Broadley)

【그림1】 The SPECTATOR [<https://spectator.com/article/should-boarding-schools-be-phone-free/>]

## 1. 들어가며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앨런 튜링의 나라인 영국은 항상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잉글랜드의 교육 현장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그 혁신의 산물인 스마트폰과 씨름하고 있다. 학생의 수업 집중도 저하, 사이버 불링, 온라인 위해(危害) 노출 등 교실 안팎의 문제들이 쌓이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교육 현장의 대응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교육부(DfE)는 2024년 2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비법정 지침을 발표하며 정책적 개입에 나섰다, 2026년

1월에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한 전일과 동안 '모바일 기기 없는 환경 (mobile phone-free environment)'을 조성하도록 방향을 한층 명확히 한 개정 지침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 지침은 법적 강행 규정보다는 학교 운영 기준을 강화한 행정 지침의 성격이 크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 (Smartphone Free Childhood)' 운동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의 본격적인 시행은, 디지털 기기 규제가 단순한 통제가 아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임을 시사한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의 마틴 올리버(Sir Martyn Oliver) 청장이 강조했듯, 교실은 학생들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전한 성소(Sanctuary)'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영국의 초·중등학교 디지털 기기 규제 정책의 전개 과정과 현장 적용 사례, 그리고 남은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인 한국 교육 현장에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 2. 본론

### 가. 정책의 진화: 자율적 권고에서 국가적 표준으로의 전환

영국 교육부(DfE)의 디지털 기기 규제(Mobile phones in schools)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제도적 변화를 거쳤다. 2024년 2월 발표된 초기 지침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비법정 지침 (Non-statutory guidance)'의 성격을 띠었다. 당시 지침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지 방식과 수위는 각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 모델은 학교별 규제 강도의 편차를 야기했고, 등교 시 부모와의 연락이나 교실 내 수업 보조 도구로서의 활용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밀려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6년 1월, 한층 강화된 '비법정 개정 지침'을 통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영국의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기본 표준(Default Standard)'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 지침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등 기타 스마트 기기에도 동일한 금지 원칙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학교 전체가 일과 시간 내내 휴대폰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Phone-free environment)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명문화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반입 제한, 등교 시 제출, 사물함 보관(locker), 파우치(pouch) 사용, '보이거나 들리면 압수(Never used, seen or heard)' 원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휴대전화 없는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학교장이 정책 위반 학생의 기기를 압수하거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2024년 최초 지침에서부터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2026년 개정 지침에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침은 당뇨 환자의 혈당 모니터링이나 의료적 필요가 있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괄적 강제가 아닌 원칙과 유연성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6년 이 비법정 지침을 학교의 법적 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consultation)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책이 이미 완결된 법적 규제라기보다, 학교 현장 적용 결과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표1】 영국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기 규제 유형

구분	대상 학교/재단	주요 규제 방식	주요 특징 및 교육적 결과
단계적 확대형	오미스톤 아카데미 트러스트 (Ormiston Academies Trust)	일부 학교부터 phone-free 정책 도입 후 단계적 확대	대형 교육재단 차원의 단계적 확산 사례로, 학생 간 대면 소통 확대와 학교 문화 개선을 목표로 추진.
기본폰 전환형	이튼 칼리지 (Eton College) 등 주요 사립학교	신입생의 스마트폰 반입 금지, 학교 제공 기본형 휴대전화 사용	낮 시간 스마트폰 차단과 최소 연락 기능 유지를 병행하는 절충형 모델
잠금 파우치 활용형	시플레이크 칼리지 (Shiplake College) 및 일부 중등학교	특수 잠금 파우치(Yondr 등)에 기기를 넣고 보관	학생이 기기를 소지하되 일과 중에는 개방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차단.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디지털 디톡스' 환경 조성에 효과적.
비노출·무소음 원칙형	다수의 공립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s)	기기 소지는 허용하되, 교내에서 노출되거나 소음 발생 시 즉시 압수 (Never seen, never heard)	규정 위반 시 법적 권한에 근거한 즉각적인 압수 조치 시행. 학생들에게 기기 사용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기 통제력 강조.
학부모 협력형	세인트 마거릿 초등학교 (St. Margaret's Primary)	초등학생 스마트폰 미소지 원칙 및 학부모 공동 약속 추진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SFC)' 운동과 연계. 학교 밖에서도 저학년 기기 보급을 늦추도록 학부모 워크숍 및 교육 병행.

나. 평가 체계의 변화: Ofsted의 점검 반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는 교육기준청(Ofsted)의 점검 반영이다. Ofsted는 2026년 4월 1일부터 모든 학교 점검에서 학교의 휴대전화 정책,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안내 수준, 정책 집행의

일관성, 그리고 그 정책이 학습·행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휴대전화 규제는 더 이상 개별 학교의 생활지도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문화와 행동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점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예외를 두는 경우에도 Ofsted는 그 예외의 이유와 일관성을 함께 확인하겠다고 밝혀, ‘금지 여부’보다 ‘정책의 명확성과 실행력’이 더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틴 올리버(Sir Martyn Oliver) 청장은 교실 내 기기 방치가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이버 불링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감사관들은 학교 방문 시 휴대전화 정책이 명확히 안내되고 일관되게 시행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학생의 행동·안전·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된다. 즉 휴대전화 규제는 학교의 선택 사항을 넘어, 행동 관리와 학교 문화의 질을 보여주는 점검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 다. 사회적 연대와 법적 배경

영국의 이번 규제 강화는 교육계 내부의 논의를 넘어, 범국가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더 넓은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2025년부터 불법 콘텐츠 및 아동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학교 규제 강화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교육 현장 운영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Smartphone Free Childhood, SFC)’ 운동은 정책 추진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이 운동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것을 개별 가정의 선택이 아닌 지역사회와 학교 단위의 ‘공동 약속’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영국 정부는 2026년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연령 확인 강화, 중독적 기능 규제 방안 등을 폭넓게 의견수렴(consultation)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의 기기 규제 정책이 사회 전체의 디지털 보호 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라. 현장의 변화와 남은 과제

정책 시행 이후 영국의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중등학교(Secondary School)를 중심으로 쉬는 시간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교내 괴롭힘 사건 접수 건수가 하락하는 추세다. 옥스퍼드셔주 디드콧(Didcot)에 위치한 오레우스 스쿨(Aureus School)은 2024년 9월 전교생에 Yondr 잠금 파우치를 도입한 이후 전년 대비 무단이탈(truancy)이 48% 감소했으며, 사이버 불링 신고가 줄고,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

과 수업 집중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Ofsted 점검에서 교육, 행동 및 태도, 개인 발달, 리더십 등 각 영역에서 모두 '양호(Good)' 평가를 받았다. 학교 측은 이러한 성과가 파우치 도입만의 효과가 아니라 학교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2】 Yondr 잠금 파우치 운영 안내 사례(Manor CE Academy 학부모 안내 자료)

에식스주 스탠웨이 스쿨(Stanway School)의 사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학교는 요크대학교 연구팀과 협력하여 21일간의 스마트폰 금지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은 Channel 4 다큐멘터리 《Swiped: The School That Banned Smartphones》로 제작·방영되어 사회적 공론화에 크게 기여했다. 실험 결과, 참가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증가하고 취침 시간이 50분 앞당겨졌으며, 잠드는 속도도 20분 빨라졌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우울 관련 감정이 17%, 불안 관련 감정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후 Netflix를 통해 공개되면서, 학교 현장의 스마트폰 규제 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들 역시 수업 중 알림 소리나 몰래 촬영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수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굣길 안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기기 수거와 보관에 따르는 행정적 부담과 분실 시 책임 소재 문제 역시 학교 현장의 고민거리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기를 ‘압수’하는 물리적 규제를 넘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정서학습(SEL)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국의 사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 기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단순한 기술 수용이 아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3. 맺음말

영국 학교의 휴대전화 규제 강화는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을 넘어, 학습권·복지·온라인 안전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정책의 재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흐름은 전면적 법제화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기보다, 비법정 지침의 강화와 Ofsted 점검 반영, 사회적 합의의 확산이 맞물리며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깝다. 실제로 규제 시행 이후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 증가와 사이버 불링 감소 등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서 보고되면서,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이 사례의 핵심은 '금지' 자체가 아니라, 학생 보호와 학습 몰입이라는 공적 목표를 위해 학교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데 있다.

물론 규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금지가 학생의 디지털 역량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가정과의 즉각적인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정책의 실효성이 제도적 강제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공동 실천을 바탕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의 자기조절 역량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기기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26). Mobile phones in school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obile-phones-in-schools/mobile-phones-in-schools>
- ▶ Ofsted Blog. (2026). What the government's updated guidance on mobile phones means for school inspections.
- ▶ UK Government. (2026). Government to drive action to improve children's relationship with mobile phones and social media.
- ▶ UK Government. (2026). Growing up in the online world: a national conversation.
- ▶ legislation.gov.uk. (2023). Online Safety Act 2023.
- ▶ University of York. (2024). School smartphone ban results in better sleep and improved mood.  
<https://www.york.ac.uk/news-and-events/news/2024/research/school-smartphone-ban-better-sleep/>
- ▶ Smartphone Free Childhood. (2025). Aureus School, Didcot.  
<https://www.smartphonefreechildhood.org/resources/success-stories/aureus-school-didcot>
- ▶ The Spectator. (2024). There's a reason Eton is cracking down on smartphones.  
<https://spectator.com/article/theres-a-reason-eton-is-cracking-down-on-smartphones/>



# 프랑스의 디지털 기기 규제

발간위원 : 박다형(계림고등학교 교사)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교육 환경에서의 기기 사용 관리가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의 일상적 디지털 사용과 수업 참여, 학교 생활 간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며,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습 활동과 학교 공동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프랑스 교육 정책에서는 학교를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교 공동체의 생활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은 개인적 선택의 영역을 넘어 교육 활동과 관련된 관리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형성의 배경과 제도 구조,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책 형성 배경

### 가. 청소년 디지털 기기 이용 환경

프랑스 통신규제기관(ARCEP)의 「Baromètre du numérique」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약 95% 수준으로 나타나며, 스마트기기는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온라인 콘텐츠 이용 등 다양한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자료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이용이 일상적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청소년의 생활 방식뿐 아니라 학습 환경과

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나. 학교 교육 환경과의 관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학교는 학생의 일상적 디지털 사용과 교육 활동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공간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은 수업 중 주의 집중,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 생활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논의되며, 사이버 괴롭힘(cyberharcèlement)과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단순한 개인적 행위를 넘어 학교 교육 환경과 관련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 내에서의 기기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관리할 필요성과 연결된다.

## 2. 법적 기반과 제도 구조

프랑스에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수업 중 주의 집중 저해, 학생 간 상호작용 감소,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점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학교를 학습 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유지할 필요성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프랑스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는 「교육법(Code de l'éducation)」 제L511-5조와 2018년 제정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제 법(Loi n° 2018-698 du 3 août 2018)」을 근거로 하며, 해당 규정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 통신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한다. 이 규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적용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라 적용 여부와 운영 방식이 정해진다.

프랑스의 스마트기기 규제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한 학교 생활 전반에서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교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며, 장애 학생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학교의 '학교 규칙(règlement intérieur)'을 통해 설정되며, 해당 규칙에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교 생활 규범과 함께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학교 규칙(règlement intérieur)은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규칙에는 스마트기기 사용의 제한 범위, 예외 조건, 위반 시 조치 방식 등이 함께 포함되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학교별로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적용 수준과 관리 방식은 학교

단위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규제 대상은 휴대전화에 한정되지 않고, 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 기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스마트워치와 같은 연결 기기 역시 학교 규칙에 따라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 구조는 국가가 기본적인 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영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의 규칙에서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교사의 허가 없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압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의 사용은 교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이 함께 제시된다. 이러한 규정은 학교 규칙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조치 절차를 명시하는 문서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 3. 학교 현장의 운영 방식

프랑스의 일부 중학교(collège)에서는 학생이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별도의 보관함이나 교실 내 수거함에 제출하고, 하교 시 이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학생이 학교 생활 동안 스마트기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방식으로 사용된다. 보관 방식은 학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개인별 보관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급 단위로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개별 파우치에 넣어 소지하도록 하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기의 소지는 허용하면서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를 가진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한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학교 공간에서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수업 중 기기 사용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림 1] 프랑스 학교 스마트폰 보관 운영 사례(보관함) 1)



[그림 2] 프랑스 학교 스마트폰 보관 운영 사례(파우치) 2)

1) 출처: Range Ton Portable, “Découvrez la Phone Box Range Portable Collège Lycée”, 2025

프랑스의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자료 검색이나 특정 학습 활동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통제 하에 사용이 이루어진다. 스마트기기 사용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기기 사용을 보관, 수거, 제한적 사용 허용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단일한 형태로 적용되기보다는 학교의 운영 기준과 환경에 따라 조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기기의 소지를 허용하면서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와 물리적 보관을 통해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 병행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 4. 정책의 확장: 학교 규제에서 디지털 사용 관리 정책으로

프랑스의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보관 및 제한적 허용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생의 디지털 기기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업 시간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정 시간 제한하거나, 학교 활동 중 디지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은 단순한 제한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일상적 디지털 기기 이용 전반을 조절하기 위한 방향에서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pause numérique(디지털 쉼표)’라는 개념이 정책 설명 과정에서 제시되며, 이는 학생이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개념은 수업 활동이나 학교 생활 지도 과정에서 적용되며,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프랑스 교육부와 정부 자료에서는 ‘pause numérique’와 같은 정책이 단순한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단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함에 제출하거나 파우치에 넣어 개봉을 제한하는 방식이 ‘디지털 쉼표’의 실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학생이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학교 규칙과 연계되어 적용되며, 학생의 일상적 기기 사용을 시간 단위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스마트기기 규제는 학교 내부 운영에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전반과 관련된 정책과 연계되어 제시된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cyberharcèlement) 대응 정책에서는 학생의 온라인 활동과 학교 생활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행동 기준을 학교 교육과 함께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사용 제한과 함께

2) 출처: Le Monde, “Le dispositif ‘portable en pause’...”, 2025.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병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학교 단계에 따라 적용 범위와 운영 기준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5. 정책의 효과와 한계

프랑스의 학교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는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교 생활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의 정책 자료 「Interdiction du téléphone portable dans les écoles et les collèges」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수업 중 학생의 주의 집중과 교실 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된다. 특히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습 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된다.

반면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사용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학교별로 적용되는 운영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규제 수준과 관리 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정책과 디지털 교육 활용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기 사용 제한과 교육적 활용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된다.

프랑스의 사례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정책이 단순한 금지 조치로 운영되기보다는, 학교 규칙과 교육 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조정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기기 사용 제한은 교육 환경 유지와 디지털 활용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함께 논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프랑스의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가 단일한 효과나 한계로 정리되기보다는, 학교 운영 방식과 교육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한 법적 기준 아래에서도 학교 규칙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정책의 적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효과 역시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 6. 맺음말

프랑스는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 내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규칙을 통해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해당 정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한 학교 생활 전반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스마트기기 규제는 학교 내부의 운영 기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함께 제시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기기 보관과 반환 절차, 기기 훼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 기준, 학생과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 디지털 교육 활용과의 관계 설정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다루어진다. 해당 사항들은 학교 규칙을 통해 구체화되며, 학교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범위와 운영 방식은 학교 단위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조정되며, 그 결과 정책은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학교별 여건과 운영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를 가진다.

#### 【참고 자료】

- ▶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37286581](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37286581)
- ▶ <https://www.education.gouv.fr/bo/18/Hebdo35/MENE1826081C.htm>
- ▶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vosdroits/F34038>
- ▶ [https://www.arcep.fr/uploads/tx\\_gspublication/barometre-numerique-2023.pdf](https://www.arcep.fr/uploads/tx_gspublication/barometre-numerique-2023.pdf)
- ▶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763581>
- ▶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1010\\_texte-adopte-seance](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1010_texte-adopte-seance)
- ▶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 ▶ [https://www.lenrnde.fr/societe/article/2023/09/27/portable-au-college-le-dispositif-portable-en-pause-experimente\\_6191452\\_3224.html](https://www.lenrnde.fr/societe/article/2023/09/27/portable-au-college-le-dispositif-portable-en-pause-experimente_6191452_3224.html)
- ▶ <https://eduscol.education.fr/1916/l-usage-du-telephone-portable-l-ecole-et-au-college>
- ▶ [https://www.francetvinfo.fr/societe/education/portable-a-l-ecole-le-gouvernement-va-generaliser-l-experimentation-de-la-pause-numerique\\_6173210.html](https://www.francetvinfo.fr/societe/education/portable-a-l-ecole-le-gouvernement-va-generaliser-l-experimentation-de-la-pause-numerique_6173210.html)



# 미국의 디지털 기기 규제

발간위원 : 남윤식(경주 문화중학교 교사)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와 학습 집중도 저하 문제가 전 세계 교육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대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는 『불안 세대』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아동·청소년기의 발달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특히 2010년대 이후 청소년의 불안, 우울, 자해 및 자살 관련 지표가 급격히 증가한 현상이 디지털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하이트는 이 책에서 청소년기의 사회적 경험이 오프라인 상호작용에서 온라인 상호작용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수면 감소, 주의 분산, 사회적 비교 및 사이버 괴롭힘 노출이 증가하였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은 교육정책 차원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업 시간 또는 학교 시간 전반에 걸친 휴대폰 사용 금지, 학교 네트워크에서의 소셜미디어 접근 차단, 연령 기반 SNS 이용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책 흐름은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이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기사에서 미국의 학교 내 디지털 기기, SNS 사용 규제 정책 및 디지털 시민교육 동향을 살펴 고자 한다.

## 1. 미국의 각 주별 청소년 SNS 규제 정책 현황

미국은 연방 차원의 SNS 규제 대신 주별 입법을 통해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 제한, 연령 확인, 부모 동의, 알고리즘 피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가. 미네소타 주 325M.335

미네소타 주는 미국 내 다른 주와 달리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방식보다, 정신건강 보호와 아동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적 접근의 SNS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정신건강 경고라벨 제도, 청소년 SNS 콘텐츠 노동 보호, 플랫폼 책임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경고라벨 제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미네소타 주는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Minnesota Statutes 325M.335」를 통해 SNS 플랫폼 이용 시 정신건강 경고라벨(mental health warning label)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법은 SNS 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이용자 화면에 경고라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이용자가 SNS 사용의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을 인지한 후 계속 이용을 선택하기 전까지 해당 표시가 유지되도록 요구한다. 경고 내용에는 SNS 이용이 우울, 불안, 고립감, 자해 및 자살사고 등 부정적 정신건강 결과와 연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988 자살예방 상담전화(Suicide and Crisis Lifeline) 등 정신건강 지원 자원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은 이러한 경고라벨을 약관이나 설정 메뉴와 같은 비가시적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자가 임의로 경고 표시를 비활성화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고의 가시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나. 캘리포니아 SB976

캘리포니아 주는 2024년 9월 「Protecting Our Kids from Social Media Addiction Act(SB 976)」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 설계를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법은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의 확인 가능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또한 SNS 기업이 미성년자에게 야간 시간(자정~오전 6시) 및 학기 중 수업 시간대(오전 8시~오후 3시)에 알림을 전송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미성년자 계정에 기본적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는 SNS 기업의 참여 유도 설계와 알고리즘 추천 구조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과 정신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중보건적 문제 인식에 기반한다.

다. 플로리다 HB 31)

이 법은 14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14세 및 15세 청소년이 SNS 계정을 이용하려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또한 SNS 플랫폼은 연령 확인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 계정을 식별하고,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 동의가 없는 계정은 일정 기간 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더 나아가 부모는 자녀의 SNS 계정 삭제를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 세 가지 법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미네소타 325M.335	캘리포니아 SB 976	플로리다 HB 3
시행 일자	2026.7 예정	2027 예정	2025
정책 유형	위험 경고형	설계 규제형	접근 금지형
규제 대상	SNS 이용 위험 전 이용자	알고리즘·알림 기능	미성년자 계정 자체
연령 기준	(청소년 포함)	18세 미만 보호	14세 미만 금지
핵심 조항	접속 시 경고라벨 정신건강 위험 고지 988 자원 제공	중독형 피드 금지 부모동의 시 허용 야간·수업시간 알림 제한	14세 미만 계정 금지 14-15세 부모동의 계정 삭제 의무
규제 강도	중	강	매우 강

[표 1]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의 SNS 규제 정책 비교

## 2. 미국의 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 규제

미국의 학교 휴대폰 정책은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州) 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분권적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학습 집중도 저하, 사이버불링, 무단 촬영 및 사생활 침해,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Yondr pouch는 학교나 공연장 등에서 개인의 휴대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개발된 잠금형 보관 파우치 시스템이다. 학생이 휴대폰을 파우치에 넣어 잠그면 기기를 계속 소지한 상태를 유지하되, 지정된 해제 장치가 있는 장소에서만 파우치를 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휴대폰을 학교가 일괄 수거하는 방식과 달리 소지는 허용하되 접근을 제한하는 관리 모델에 해당한다. 미국 내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와 현실적 우려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1] YONDR 사용하는 모습  
(출처: Yondr 공식 사이트)

1) 최근 미국 내에서 청소년 SNS규제 중 계정 생성 자체를 금지한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알려져 있음.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긍정적 효과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중 휴대폰 접근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주의 집중도와 수업 참여도 향상</li> <li>• 메시지·SNS·게임 등 수업 방해 행동 감소</li> <li>• 무단 촬영·녹음 및 사이버불링 등 휴대폰 관련 생활지도 문제 감소</li> <li>• 교사의 휴대폰 수거·반납 관리 부담 감소 및 규칙 적용 일관성 확보</li> <li>• 학생이 기기를 계속 소지하므로 분실 책임 논쟁 감소</li> <li>• 학교 전일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 운영 용이</li> </ul>
부정적 효과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 상황 시 학생의 즉각적 연락 접근성 제한에 대한 안전 우려</li> <li>• 파우치 훼손·우회 개방 등 규정 회피 가능성</li> <li>• 파우치 구입 및 해제 장치 설치 등 비용 부담</li> <li>• 등·하교 시 해제 동선 관리 및 감독 인력 필요</li> <li>• 분실·파손·미반납 등 행정 처리 부담</li> <li>• 일부 학생·학부모의 사생활 통제 및 자율성 침해 인식</li> </ul>

[표 2] Yondr pouch 사용의 미국 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비교

### 3. 미국 학교에서의 디지털 시민 교육

미국에서는 휴대폰 사용 규제 정책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주(州) 및 교육청 단위에서 결합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 제한 법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온라인 책임 교육을 병행하는 정책 모델이 나타난다. 주요 주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는 앞에서 언급한 HB 3 법을 통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2024학년도부터 6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해당 교육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정보 환경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에는 온라인 정보의 진위 판단과 허위정보 대응, 디지털 발자국과 개인정보 보호,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건강과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해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생이 온라인에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남는 디지털 기록(digital footprint)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강조되며 수업에 소셜미디어의 사회·정서·신체적 영향 이해, 디지털 시민성(책임·윤리·예절·보안), 온라인 위험과 허위정보 인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사용, 디지털 흔적 인식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다.

2) 관련 기사 <https://www.redlake.k12.mn.us/o/rlsc/article/1127737>

3) 관련 기사 <https://redwoodbark.org/94868/opinion/editorial-the-student-bodys-case-against-yondr-pouches/>

## 나. 메인주

메인주 포틀랜드 공립학교(Portland Public Schools)는 학생의 책임 있는 디지털 기기 사용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휴대폰과 온라인 기술을 단순히 규제 대상 위험 요소로 보기보다,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 기술로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 행동을 교육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온라인 행동 책임, 존중과 배려의 의사소통,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발자국 관리, 온라인 안전 등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하고 있다. 포틀랜드 공립학교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교과 수업과 생활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초·중등 단계에서 정보·기술 활용 수업과 학급 회의, 상담·생활교육 시간을 통해 온라인 예절과 책임 있는 의사소통, 사이버불링 예방,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지도한다. 특히 학생이 온라인에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남는 디지털 기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행동을 학습하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은 학년 수준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제공되어 학생의 디지털 사용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 다. 뉴욕시

뉴욕시는 휴대폰 사용 규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 교육청은 디지털 시민성을 “학생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실천”으로 정의<sup>4)</sup>하고, 모든 학생이 이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교육 내용에는 온라인 행동 규범, 책임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 사이버불링 예방, 디지털 안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청은 학년별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전 학년에 걸쳐 온라인 행동 책임과 기술 사용 규범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관·미디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 교육청 도서관 서비스는 Common Sense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정을 주 교육 기준에 맞게 정렬하여 학교가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 4. 맺음말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와 학습 집중도 저하 문제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둘러싼 정책이 각 주의 법, 학교 규제, 디지털 시민교육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별 SNS 규제는 플랫폼 이용 환경을 통제하는 공중보건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과 물리적 관리 수단을 통해 학습 환경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4) 관련 사이트 <https://infohub.nyced.org/in-our-schools/programs/digital-citizenship>

동시에 디지털 시민성 및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의 책임 있는 온라인 행동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대응이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사례는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문제가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이 아니라 학습권과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교육환경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 내 사용 제한과 학교 밖 책임 있는 사용 교육을 결합한 접근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참고 자료】

- ▶ <https://www.revisor.mn.gov/statutes/cite/325M.335>
- ▶ <https://www.mprnews.org/story/2025/07/14/minnesota-law-to-require-mental-health-warnings-on-social-media>
- ▶ <https://www.cbsnews.com/minnesota/news/minnesota-social-media-warning-label-law/>
- ▶ <https://legiscan.com/CA/text/SB976/id/2906507>
- ▶ <https://apnews.com/article/california-social-media-addiction-children-law-bc649326701f892a16be1159bc008d71>
- ▶ Florida Statutes § 501.1736, Social media use by minors, Florida Legislature.
- ▶ <https://apnews.com/article/florida-social-media-ban-minors-lawsuit-678e71c6c6183b87435b7f51feb71fbe>
- ▶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3/52/BillText/c1/HTML>
- ▶ <https://www.portlandschools.org/department/technology/resources-for-using-technology-responsibly>
- ▶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digital-learning/digital-citizenship>



# 호주, 뉴질랜드의 디지털 기기 규제

발간위원: 정지숙(사동초등학교 교사)

## 1. 도입 배경 및 정책 개요

가. 전면 금지 정책 시행 배경: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국제적 흐름

학교 내 디지털 기기 규제는 단순히 기기 사용을 막는 것을 넘어, 교육의 본질적인 환경을 회복하려는 글로벌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3년 유네스코(UNESCO)가 발간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GEM Report)」는 과도한 화면 노출 시간이 아동·청소년의 자기 통제력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불안과 우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sup>1)</sup> 특히 유네스코는 학습 방해를 최소화하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권고하였는데, 현재 전 세계 학교의 약 4분의 1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권고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특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정책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아동 심리학자 마이클 카-그레그(Dr. Michael Carr-Gregg) 박사의 검토 보고서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sup>2)</sup> 호주의 각 주 교육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검토를 바탕으로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일찍이 도입하였고, 이에 더해 호주 연방 의회는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2024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가입을 금지하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Act 2024)'을 통과시켰다. 2025년 말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은, 학교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기기를 차단하고 학교 밖에서는 플랫폼 접

1) UNESCO,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3: Technology in education: A tool on whose term?, 2023.

2) Carr-Gregg, M. (2018). Review into the non-educational use of mobile devices in NSW schools. NSW Department of Education.

속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정신 건강을 입체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선례 사례로 자리잡았다.

뉴질랜드는 정책을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과 학부모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직접 개입하였다. 2020년 교육훈련법(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 산하의 교육 규정(Education Regulations)을 전격 개정하여, 모든 국공립 및 통합학교의 이사회가 일과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및 접근을 금지할 의무를 지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학교가 규정에 따라 기기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되었다.

#### 나. 정책의 핵심: 각종 디지털 기기 '일과 시간 내 금지' 원칙의 확립

호주와 뉴질랜드는 2020년 빅토리아주를 필두로 점진적인 시행을 거쳐, 2024년 4월에 이르러 양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전면적인 규제 정책을 완성하였다. 슬로건이 각 국 및 주별로 다르지만 정책의 핵심은 '일과 시간 내 금지' 원칙이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과가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 스마트 기기의 전원을 꺼야 하며, 학교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스마트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대상은 스마트워치나 개인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통신 기능이 있는 각종 기기를 학교에 들고 올 경우 반드시 비행기모드나 알림끄기 상태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스마트폰 규정 위반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정책은 기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단순한 금지를 넘어, 학교를 온전히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되돌리려는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2. 국가별 및 주별 규제 현황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역별 교육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혹은 주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일과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Off and Away, All day' 원칙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가. 호주의 디지털 기기 규제 현황

호주의 경우 전국의 모든 주에서 공립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은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로, 2020년부터 호주 최초로 주 차원의 전면 금지 정책(Mobile phones - student use policy)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은 일과 시간 동안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사물함 등 학교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시드니를 관할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초등학생의 기기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오던 것에 더해, 2023년 10월(4학기)부터는 이를 모든 공립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했다. 중·고등학생 역시 등교부터 하교 시까지 기기를 꺼두어야 하는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서비스 사용 정책(Student use of digital devices and online services)'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그림1]

빅토리아주 정책 포스터

또한, 브리즈번이 있는 퀸즐랜드주 역시 2024년 1학기부터 'Away for the Day' 정책을 전격 도입하며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한 일과 시간 전체에 걸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개인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절차(Student use of mobile phone devices procedures)를 시행 중이다.

#### 나. 뉴질랜드의 디지털 기기 규제 현황

뉴질랜드는 주별로 정책이 나뉘는 호주와 달리, 럭슨(Luxon) 정부 출범 이후 전국 단위의 강력한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4월(2학기)을 기점으로 뉴질랜드 내 모든 국립학교에서는 'Phones away for the day' 정책이 의무화되어 학교 일과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업 시간 외에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모두 포함한다. 다만, 정부가 큰 틀의 원칙을 강제하면서도 구체적인 기기 보관 방식이나 관리 체계는 각 학교가 소속된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2]

뉴질랜드 정책 포스터

### 3.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및 관리 방식

#### 가. 기기 보관 방법

호주의 각 주 교육부와 뉴질랜드 교육부는 정책의 큰 틀을 국가 및 주 차원에서 강제하면서도, 구체적인 기기 보관 방식은 각 학교가 처한 예산이나 시설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보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관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가장 권장되는 형태인 잠금 장치가 있는 개인 사물함(Lockers)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이나 잠금 장치가 있는 특수 파우치(Yondr)<sup>3)</sup>에 넣어 하교 시까지 본인이 소지하는 방법, 시설 투자 예산이 부족한 경우 택

하는 가방 내 보관(In-bag)하는 방식 그리고 교무실 등에 일괄 제출하여 보관하는 중앙 집중 보관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관 및 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파손이나 분실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육부는 교사 및 학교의 책임 면제 조항을 명확히 두고 있다. 학교가 제공한 보관함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교사가 기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해 보관하는 중 파손되더라도 학교와 교사가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이나 학부모 동의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 나. 예외 허용 기준

이러한 규제가 무조건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통된 예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모든 예외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과 문서화(내부결재)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예외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기가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다. 교사가 수업 시 카메라나 특정 교육용 앱을 활용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장애 학생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 기구로 쓰일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둘째, 학생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당뇨가 있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동된 앱을 확인해야 하거나, 기타 만성 질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학생들은 '학생 건강 지원 계획'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후 기기를 상시 소지할 수 있다. 셋째, 위험 관리 및 긴급 상황인 경우이다. 가정 내 환자를 돌보아야 하여 긴급 연락을 대기해야 하는 학생이나, 캠프 및 현장 체험학습 중 무단 이탈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다. 학부모 및 학생 수용성 제고 방안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 각 교육부는 일방적인 지시나 통보가 아닌, 교육 공동체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 학부모회 및 학생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학교별 실정에 맞는 '로컬 정책'을 수립하도록 사전 협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 빅토리아주는 3~4년 주기로 해당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본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뉴질랜드 교육부는 마오리어로 가족을 뜻하는 '파나우(Whānau)

3) 미국 Yondr사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파우치로, 기기를 넣고 입구는 특수 자석장치로 잠기며 학교 시 잠금 해제용 장치에 갖다대어야만 잠금이 해제되어 기기를 꺼낼 수 있음.

를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일관된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sup>4)</sup>

#### 4. 정책 시행의 효과와 현장의 반응

##### 가. 정책 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

호주와 뉴질랜드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규제 정책 시행 이후 가장 즉각적이고 뚜렷한 변화로 '수업 집중도의 비약적 향상'을 꼽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교육부의 평가에 따르면, 수업 중 끊임없이 울리던 기기 알림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이나 개별 과제에 깊이 몰입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질랜드 교육평가청(ER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방해 금지(Do Not Disturb: A review of removing cell phones from New Zealand's classrooms. New Zealand Government)'는, 전면 금지 조치 이후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의 실시간 압박에서 벗어나 학업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sup>5)</sup> 교실 밖 운동장과 휴게 공간의 풍경 역시 확연히 달라졌다. 쉬는 시간마다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화면에만 매몰되어 있던 학생들이 점차 서로 눈을 맞추며 대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교육부 등 양국의 교육 당국은 정책 시행 이후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대면 상호작용이 늘어나 교우 관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여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던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사례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 나. 현장의 주요 과제와 지속적인 논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학교 현장에 온전히 안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휴식 시간 내 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교육적 실효성 사이의 딜레마이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 단체는 무조건적인 물리적 차단이 오히려 학생 스스로 기기 사용을 조절하는 '자기 주도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 교육 당국은 단순한 금지를 넘어, 기기 없이도 또래와 즐겁게 소통하고 설 수 있는 대안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정책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실제로 규정을 위반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가족과의 연락'으로 꼽힐 만큼, 등하굣길 안전이나 일과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4)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24). Phones at school - Guide for parents and whānau.

5) Education Review Office (ERO). (2025). Do not disturb: A review of removing cell phones from New Zealand's classrooms. New Zealand Government.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와 교육청은 교무실을 통한 비상 연락망을 한층 강화하고,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학습 시에는 기기 사용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등 세부 지침을 다듬어 가고 있다. 결국 본 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기기의 단순한 '압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디지털 기기 없는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깊이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소통의 과정에 달려 있다.

## 5. 국내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 가.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학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호주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규제를 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단호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기기 문제에 대해 학교와 교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교사 면책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 나. 풍선효과 및 우회 사용 차단을 위한 실효성 확보

스마트폰 제출 후 스마트 워치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거나 개인 태블릿을 사용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와 몰래 사용하는 이른바 몰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규제 대상을 스마트폰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디지털 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학교 내 비행기 모드 전환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리적 통제력을 높이면서도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특수 파우치나 잠금형 사물함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보관 인프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 <https://www.unesco.org/gem-report/en/publication/technology>
- ▶ <https://education.nsw.gov.au/policy-library/policies/pd-2020-0471>
- ▶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students-using-mobile-phones/policy>
- ▶ <https://ppr.qed.qld.gov.au/attachment/student-use-of-mobile-devices-procedure.pdf>
- ▶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24). Phones away for the day



# 일본의 디지털 기기 규제

발간위원 : 조주현(금락초등학교 교사)

일본은 GIGA 스쿨<sup>1)</sup> 구상에 따라 초·중학교 1인 1기기 보급과 수업 속 디지털 활용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학생 개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학교·지자체·가정이 협력해 사용을 제한하고 생활 리듬을 조정하는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기기, 특히 스마트폰 규제가 어떠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교 현장과 지자체 조례, 아동·청소년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정리한 뒤, 경북교육의 디지털 기기 규제와 비교해보고 생각해 볼 지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1. 일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와 사회적 문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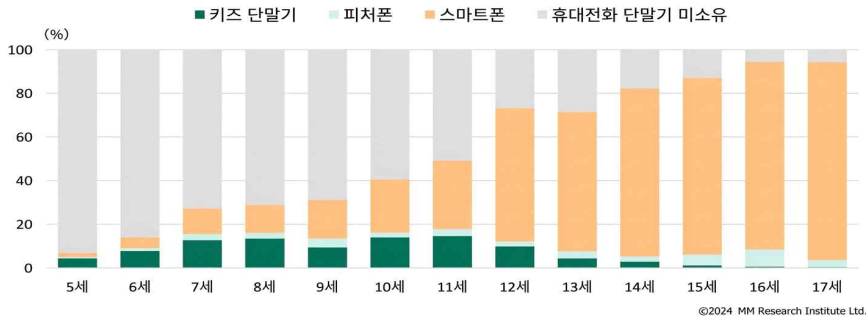
### 가. 보급률과 사용 행태

일본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저연령층에서도 소지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56%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며, 18세 미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약 4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세 전후에는 중학생 진학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갖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보고되었다.

1) GIGA School :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 IT 인재 양성 계획. 학생들이 ICT 기술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추진 사업

※ IT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GhatGPT 사용 가이드라인 및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등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데이터 1】 아동의 휴대전화 단말기 소유 현황 (n=2,772) ※1



[그림 1] 일본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이용 시간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의 인터넷 이용 환경 실태조사<sup>2)</sup>에서 따르면 청소년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평일 3~4시간 이상, 휴일 5~6시간 이상 사용하며, 대부분 SNS, 동영상 시청, 게임에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에서의 야간 사용시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 나. 보호자와 사회의 우려

보호자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 조사에서 보호자가 응답한 주요 불안 요소는 ‘SNS를 통한 트러블(사이버불링, 악성 댓글, 온라인 인간관계 갈등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스마트폰 의존’, ‘시력 저하’, ‘학력 저하’, ‘범죄 피해 위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 정부 보고서<sup>3)</sup>에서도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부족, 정신 건강, 학교 생활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사용 시간과 내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사회는 “디지털 활용은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인식과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은 일정 수준의 규제와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 2. 제도적 기반과 중앙정부 정책

### 가. 문부과학성의 기본 방침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学校における携帯電話の取扱い等に関する通知(학교에서의 휴대전화의 취급 등에 관한 통지)」를 통해 초·중학교의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교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업 방해, 학교 내에서의 부적절한 인터넷·SNS 사용, 분실·도난·파손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을 근거로 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명시했다.

2) 令和5年度「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実態調査」報告書, 2023

3) 我が国における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に係る調査, 2024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재해·사고 시 긴급 연락 수단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문부과학성은 2020년 다시 회의<sup>4)</sup>를 거쳐 중학생의 휴대전화·스마트폰 교내 반입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일부 조정하였다. 새 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스마트폰·휴대전화 교내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장거리 통학, 대중교통 이용,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 등에서는 보호자의 요청과 학교·교육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할 수 있음.
- 중학교: 재해 시 연락, 동아리 활동 중 이동, 야간 귀가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내 반입을 ‘조건부 허용’. 수업 중 사용은 금지하고, 보관 장소·방법·시간·위반 시 조치 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권고.
- 고등학교: 원래부터 교내 반입은 허용되었으며, 수업 시간·시험 중 사용 금지, 반복 위반 시 지도 등 규제를 교칙에 명시하도록 안내.

#### 나. 자율 규제와 학교, 교육위원회의 역할

문부과학성은 학교급별 기본 원칙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운영 규정(예: 보관함 사용, 등·하교 시 사용 허용 범위, 위반 학생에 대한 지도 방식 등)은 각 도도부현·시정촌 교육위원회와 학교에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 규제 구조를 인정하는 동시에, 각 학교가 학부모와 협의해 현실적인 규칙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 3. 학교 현장의 운영 체계

#### 가. 학습용 단말과 개인 스마트폰의 구분

GIGA 스쿨 구상<sup>5)</sup>에 따라 일본 초·중학교에는 1인 1대 학습용 단말(태블릿·노트북)이 보급되었고, 수업에서의 디지털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MM종합연구소 조사(2024)<sup>6)</sup>에 의하면 “수업에서 거의 매일 단말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지자체 비율이 70%를 넘었고, 과제 제시,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문제지, 영상 자료 활용 등 수업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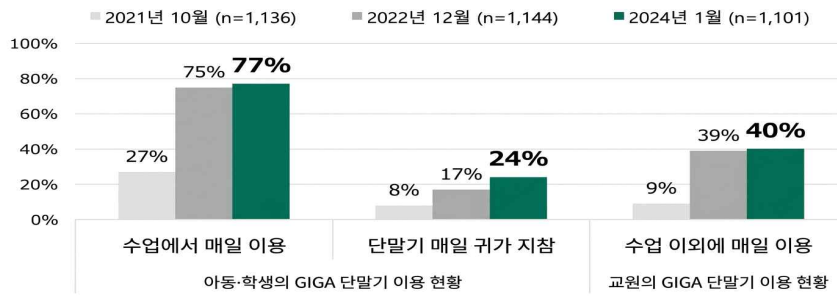
4) スマホ持ち込みに4条件 中学校向け、文科省通知, 2020

5) GIGAスクール構想の実現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191225-mxt\\_syoto01\\_000003278\\_03.pdf](https://www.mext.go.jp/content/20191225-mxt_syoto01_000003278_03.pdf)

6) ICTを活用した授業スタイル変革の格差広がる, 2024

【데이터 1】 GIGA 스쿨 단말기를 매일 이용하는 지자체 비율



[그림 2] GIGA 스쿨 단말기를 이용하는 지자체의 비율 증가

이와 동시에 학교 현장은 “학습용 디지털 단말”과 “학생 개인 스마트폰”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일반적인 운영 모습은 다음과 같다.

수업 시간에는 학교·지자체가 지급한 학습용 단말만 사용하고, 개인 스마트폰은 전원을 끄고 가방에 두거나 교사가 일괄 수거하여 보관함에 넣도록 함.

- 초등학교는 학칙에서 스마트폰·휴대전화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 허용 시에도 교사 보관을 원칙으로 하는 사례가 많음.
- 중학교는 등·하교 안전을 이유로 소지를 허용하되, 교내에서의 사용은 금지하고, 아침 조회시간에 학생의 스마트폰을 모아 잠금함에 보관하는 방식 등을 채택.
- 고등학교는 반입 자유를 인정하되, 수업·시험 중 사용 금지, 위반 시 기기 압수·지도 등 학교별 학칙을 통해 관리.

NHK 방송문화연구소<sup>7)</sup>의 분석에 따르면 GIGA 스쿨 추진 이후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스마트폰·게임 장시간 사용이 수면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학교는 학습용 단말의 교육적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과 연계해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습관에 관한 교육과 지도를 병행하려 하고 있다.

#### 나.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규범 형성

최근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사적 스마트폰 사용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교원에 의한 도촬 사건, 학생과의 부적절한 SNS 소통 사례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홋카이도, 시즈오카현 등은 교사와 학생 간 연락에서 사적 스마트폰·SNS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가 지정한 공식 채널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규제가 학생 통제 차원을 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디지털 윤리와 안전한 의사소통 환경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https://www.nhk.or.jp/bunken/research/domestic/pdf/20220601\\_5.pdf](https://www.nhk.or.jp/bunken/research/domestic/pdf/20220601_5.pdf)

## 4. 지자체 조례와 생활 가이드라인 : 도요아케시 사례

### 가. 하루 2시간 사용 권고 조례

아이치현 도요아케시는 2025년 「豊明市スマートフォン等の適正使用の推進に関する条例(도요아케시 스마트폰 등의 적정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습·업무·통학을 제외한 여가 시간 동안 디지털기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초등학생 이하는 오후 9시까지, 중학생 이상(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 사용을 마치도록 권장하여, 사용 시간뿐 아니라 취침 시간에 대한 기준도 함께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으로 표현되는 디지털기기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시·학교·가정·전문가(의사·상담가 등)의 역할을 구분해 제시한다. 특히 가정에서는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사용 규칙을 논의하고 작성하도록 권장하며, 보호자 본인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정비하도록 권장한다.

### 나. 강제 규제가 아닌 ‘생활 가이드라인’

도요아케시 조례는 벌칙이나 강제 조항을 두지 않으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생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시는 조례 해설에서 “2시간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가족이 스마트폰 사용과 생활 리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며, 가정 내 대화와 자율적 규칙 설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조례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 칼럼에서는 이 조례가 스마트폰 의존 문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실제로 10대 상당수가 하루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실과 2시간 기준 사이의 간극, 자유권 침해 논란, 실효성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주어, 비슷한 시간 기준 권고, 부모 대상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 실태 조사 등 정책 실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5. 일본과 경상북도의 디지털 기기 운영 체계 비교

일본의 사례는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과 학생 스마트폰 규제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기 용도와 시간, 장소, 주체별 역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의 ‘생활 가이드라인’ 제시와 가정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경상북도와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일본		경상북도
문부과학성 기본 방침, 지자체·학교 자율 규제 병행	추진구조	교육부·경북교육청 지침, 학교 규정으로 구체화(스마트폰·디지털기기 관리 지침)
학생 스마트폰·휴대전화, 교사 사적 단말(일부 지자체)	규제대상	학생 스마트폰 중심, 교사 단말·플랫폼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 중
초: 반입 원칙 금지, 중: 조건부 허용, 고: 반입 자유+사용 규제	학교급 별 원칙	초: 교내 스마트폰 금지, 엄격 제한 중: 수업 중 사용 금지 고: 반입 허용+수업 중 사용 제한(교육청·학교별 차이)
GIGA 스쿨 1인 1단말, 수업 속 활용 확대	학습용 기기	스마트기기·노트북 보급, 디지털교과서·AI 튜터 도입 등 디지털 수업 확대
도요아케시 등 스마트폰 사용 시간·취침 시간 조례, 생활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 역할	지자체·교육청 차원의 스마트폰 사용 권장 기준, 부모 교육, 캠페인 추진

【표 1】 일본과 경상북도의 디지털 기기 규제 정책 운영체계 비교<sup>8)</sup>

## 6. 맺음말

일본의 학생 스마트폰 규제는 학습용 디지털 기기의 적극적 활용과 사적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이라는 두 방향을 동시에 지향하며, 중앙정부 방침, 학교 학칙, 지자체 조례, 가정 내 규칙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GIGA 스쿨 단말 보급과 도요아케시 조례 사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기 자체의 찬반”을 넘어서, 기기의 용도, 사용 시간과 장소, 학교·가정·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스마트폰 규제 논의에서도, 일본의 경험은 “학습권과 건강권, 자유와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 文部科学省, 「学校における携帯電話の取扱い等に関する通知」, <https://www.mext.go.jp>
- ▶ 「豊明市スマートフォン等の適正使用の推進に関する条例」  
<https://www.city.toyoake.lg.jp/secure/31594/sumahojyoureibun.pdf>
- ▶ NHK放送文化研究所, [https://www.nhk.or.jp/bunken/research/domestic/pdf/20220601\\_5.pdf](https://www.nhk.or.jp/bunken/research/domestic/pdf/20220601_5.pdf)
- ▶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2222910T00C20A8000000/>
- ▶ こども家庭庁, [https://www.cfa.go.jp/policies/youth-kankyounet/internet\\_research/results-etc/r05](https://www.cfa.go.jp/policies/youth-kankyounet/internet_research/results-etc/r05)

8) 참고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집필자가 작성함.



# 독일의 디지털 기기 규제

발간위원 : 이지현(경주여자중학교 교사)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는 교육의 핵심 도구인 동시에 학습·정서·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과 그로 인한 학습 집중력 저하, 사이버 폭력, 정신건강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사용 활성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의 규제’라는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기사는 독일의 디지털 교육 및 규제 정책에 대한 전체 맥락을 살펴보고 주(州) 별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뒤, 한국 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독일의 디지털 교육 및 규제 정책

독일은 연방제 구조로 인해 교육 권한이 16개 주(州)에 분산되어 있어,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있어 주별·학교별 자율성이 우리나라보다 큰 편이다. 먼저 전국적 차원의 KMK<sup>1)</sup>와 연방정부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 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협약 학교(Digitalpakt Schule)<sup>2)</sup>’를 통한 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 집중력 보호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규제’의 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 1) Kultusministerkonferenz(독일 주(州) 교육부 장관 회의), 독일 16개 주의 교육부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법적 강제력 없이 교육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협의·조정하는 기구
- 2)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가 행정협약(Verwaltungsvereinbarung Digitalpakt Schule)을 통해 추진하는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헌법상 교육 주권을 가진 주와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 간 역할 분담 속에서 학교 디지털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한시적 재정협력을 허용한 사례로 현재는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Digitalpakt Schule 2.0’의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임

있다. 이처럼 독일은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정책과 기기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단순 금지나 무제한 허용이 아닌 ‘교육적 활용과 통제의 균형’을 지향하는 분권형·교육 중심 디지털 정책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 사용은 강화하면서 사적·오락적 사용은 규제하는 양면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에른·헤센·니더작센 등 주별 서로 다른 규제는 이 전략의 실천 형태로, 각 주에서는 해당 주의 특성과 학교 자율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다.

## 2. 독일 내 대표 주(州)별 디지털 기기 사용 규제

### 가. 바이에른주(Bayern) : 법으로 정한 조절형 규제

바이에른주는 오래전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초기에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더라도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 사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사실상 전면 금지에 가까운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주의 분산을 막고 수업 질서를 유지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교육 현장에서 최대한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바이에른주의 정책은 단순한 금지보다는 교육 목적의 디지털 활용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태블릿·노트북과 같은 학습용 단말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일괄적 금지 방식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이에른주 교육 및 교육제도법(BayEUG) 제56조 제5항<sup>3)</sup>이다. 이 조항은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및 학교행사에서는 교사의 허가가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고, 수업 외 시간이나 학교 공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포럼(Schulforum)<sup>4)</sup>과 협의해 정한 일반 규정 또는 개별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각 학교가 자기 상황에 맞는 사용 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 점에서 바이에른주의 변화는 기존의 강한 통제형 모델에서, 법이 정한 기본 틀 안에서 학교별로 차등 운영이 가능한 조정형 모델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금지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되 학습 목적과 학교 질서를 우선하는

3)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EUG-56>

4) Schulforum,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학교 규칙과 생활 질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함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바이에른주의 정책은 디지털 기기 규제를 완화했다기보다, 조건부 허용과 통제 가능한 활용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거의 엄격한 휴대폰 전면 금지에서 학교의 자율적 관리 체계로 변화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려는 제한적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각 학교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1] 바이에른 교육 및 교수법 제7장 제56조 제5항의 요약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칙적 제한: 수업 중이든 쉬는 시간이든 '교사나 학교의 명시적 허가'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음.</li> <li>2. 초등학교 예외: 초등학생은 쉬는 시간이나 교내 공용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됨.</li> <li>3. 압수 권한: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사용할 경우, 학교 측에서 기기를 일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li> </ol> |
|--|

#### 나. 헤센주(Hessen) : ‘스마트폰 보호구역’으로 설계된 강력한 규제

헤센주는 202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이 크게 변화했다. 2025년 이전에는 학생의 사적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통일된 주(州)법 보다는, 학교가 내부 규칙과 교육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워치 사용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학교 현장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학교 간 기준 차이와 집행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헤센주는 2025년 이후 학교 내 스마트폰·모바일 디지털 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25년 3월의 공식 발표와 6월의 법제화가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3월 19일 헤센 주정부가 모든 학교에 ‘스마트폰 보호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 25일에는 헤센 주의회가 이에 맞는 헤센 학교법(Hessisches Schulgesetz)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교 내 사적 사용 제한은 주 차원의 통일 규칙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2025학년도부터 헤센주에서는 모든 공공학교에 ‘스마트폰 보호구역 (Smartphone-Schutzzonen)’을 설치하고, 학교 건물과 교내 구역에서 학생의 모바일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워치 등)의 사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 교육부는 공식 안내문<sup>5)</sup>을 통해 학교 건물과 교내 구역을 ‘스마트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사적 사용을 금지하며, 일부 학교나 학년에서는 휴식 시간·점심시간·특정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헤센주 ‘스마트폰 보호 구역’의 내용

- 학생들의 교내 및 교내에서의 개인적인 모바일 기기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소지는 허용된다.
- 중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규정에 특정 구역의 사적 사용에 대한 개별적인 예외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 교육 목적으로 모바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학년에서 허용되지만, 교사 또는 학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이에 해당된다.
- 개인적인 용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의학적 이유나 응급 상황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개인 디지털 기기는 일시적으로 압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업 종료 시까지 압수된다. 이는 예를 들어, 디지털 버스를 타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헤센주의 특징은 공식·법적으로 설계된 ‘스마트폰 보호구역’ 개념과, 그에 따른 세부 규칙이 공식 FAQ 페이지<sup>6)</sup>에 명시되어 스마트폰 보호구역의 정의, 적용 범위(대상 기기·시간·공간), 예외 조건(의료·긴급·교육 목적 사용), 기기 임시 보관·위반 시 처벌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적 사용 전면 금지 + 교육 목적 예외 + 학교·학년별 세부 조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학생의 자기조절 능력과 학교의 규율(훈육)을 균형 있게 설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 니더작센주(Niedersachsen) : 학교 자율과 지침을 중심으로 한 중간형 규제**

니더작센주는 주 전체에 일률적인 ‘수업 중 휴대전화 전면 금지 법’을 두기보다, 각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자체적인 규칙(Handy-Regelung)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5) Hessen beschließt Gesetz für Smartphone-Schutzzonen an allen Schulen

6) <https://kultus.hessen.de/smartphone-schutzzonen>

지시함으로써 학교별 자율 학칙·규정으로 사적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과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니더작센주 교육부의 주요 권고 사항과 구체적 학교별 규칙 적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3] 니더작센주 교육부의 주요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율리아 함부르크(Julia Hamburg) 교육부 장관은 "스마트폰은 초등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초등학교에서의 개인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li> <li>중·고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기기 사용이 가능한 특정 시간이나 구역(Handy-Zone)을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li> <li>교사의 역할: 교사들 역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의 모범(Vorbild)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li> </ul>
---

[표4] 니더작센주의 구체적인 학교별 규칙(Handy-Regelung) 사례

공통 사항	수업 중 교육적 목적(예: 퀴즈 앱 활용, 리서치 등)으로 교사가 허용한 경우에만 단말기 사용 가능.
초등학교 (Grundschule)	"스마트폰 없는 학교" 원칙. 기기를 가지고 오더라도 가방 깊숙이 넣어 두거나 교실 내 지정된 보관함에 제출하며, 하교 시에만 꺼낼 수 있음.
중등 1단계 (Sek I)	수업 시간 중에는 전면 금지. 쉬는 시간에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부모님과의 급한 연락 등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가 하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
중등 2단계 (Sek II/Gymnasium)	'스마트폰 구역(Handy-Zone)' 운영. 매점이나 특정 휴게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자유로운 사용 허용. 복도나 식당 등 공용 공간에서는 사용 자제 권고.

2026년부터 니더작센주와 함부르크시는 공동 지침(Leitfaden)을 통해 학교가 학생 권리·자유와 규제를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교가 학생의 기본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스마트 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규칙 제정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니더작센주의 특징은 법을 통한 획일적 금지가 아니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규제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니더작센주 학교장 협회(SLVN)에서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바이에른주처럼 '주 정부가 명확한 기준(금지 원칙)을 세워달라'며 주 정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일괄적인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을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3. 맺음말

독일의 바이에른주, 헤센주, 니더작센주의 사례가 남기는 가장 큰 시사점은 단순히 기기 사용을 ‘통제’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이 학습과 대화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교육적 청정 구역’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출발하여 관점을 ‘규제’에서 ‘보호’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주별 상황에 맞게 스마트폰을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학교를 디지털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술 활용의 효율성 못지않게 ‘기기 없는 시간’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임을 일깨워주며 기기를 잘 다루는 ‘기술’만큼이나 기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지능적 절제력’이 현대의 핵심 역량임을 시사한다. 우리 교육 현장 또한 진정한 디지털 역량이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이 아닌 기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 완성됨을 보여준 독일의 사례처럼 인프라 확충에 걸맞은 깊이 있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교가 기술의 각축장이 아닌 인간적 성장과 사유가 가능한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거듭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 <http://kmk.org>
- ▶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EUG-56>
- ▶ <https://hessen.de/presse/smartphone-schutzzonen-an-allen-schulen-einrichten>
- ▶ <https://kultus.hessen.de/smartphone-schutzzonen>
- ▶ <https://www.mk.niedersachsen.de/startseite/aktuelles/presseinformationen/kultusministerin-hamburg-und-bildungssenatorin-bekeris-praesentieren-regeln-zur-handynutzung-an-schulen-246455.html>
- ▶ <https://www.ndr.de/nachrichten/niedersachsen/niedersachsen-schulleitungen-fordern-flaechen-deckendes-handyverbot,handyverbot-158.html>